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합309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이학윤, 정형윤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진, 정인배, 홍현주

변 론 종 결 2021. 9. 17.

판 결 선 고 2021.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10. 19. 접수 제305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2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3/2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61,047,6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7. 12. 3. 사망하였는데, 자녀들로 피고와 D이 있었으며, D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9. 6. 30.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E, F가 있었다.

나. 망인과 피고 사이에는 2017. 10. 18. 망인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함께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9. 피고 명의로 2017. 10.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한 자녀인 D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14의 지분(망인에 대한 D의 상속분 $1/2 \times D$ 에 대한 원고의 상속분 $3/7$)을 취득하게 되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이전받은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14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G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망인이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하여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과 예기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은 그 이전인 2016. 3.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의 재산 일체를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포괄유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함과 동시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바가 없어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명의를 말소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인 2017. 12. 3.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과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583,111,534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언을 통하여 이를 모두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또는 유언을 통해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사망 전인 2016. 9. 20.에는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및 H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해지하며 위 각 계좌에 있던 예금 합계 92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반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였는바, 유류분의 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2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61,047,664원 $\{(583,111,534\text{원} + 920,000,000\text{원}) \times 3/2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산정하는데,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익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살피건대, 망인이 사망 당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583,111,534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위 재산들이 모두 피고에게 유증 혹은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전인

2016. 9. 20.에 해지 및 인출이 이루어진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H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에 있던 합계 920,000,000원의 예금액이 피고에게 증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갑 제8호증, 을 제1,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합계 4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망 전 D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 우체국 예금채권 3,000만 원, I 주식 98주, J주식 34주, 차량 구입비용 5,200만 원, 수표 1,500만 원, 서울시 K아파트(현 서울 용산구 L아파트 M호) 등을 증여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결국,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및 583,111,534원의 합계액에 D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위 각 부동산, 예금채권, 현금, 주식 등의 가액을 더한 후 채무액 420,000,000원을 뺀 금액이 되고, 그 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계산한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다시 위 각 부동산, 예금채권, 현금, 주식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인데, 그 가액 산정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뿐만 아니라, 갑 제6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E, F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9느합1004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망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에게 포괄유증을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 답변서가 2019. 6. 26.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또한 위 무렵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3. 3.에야 비로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설령,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 또한 이유 있고, 결국 이와 같은 측면에 의해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서울가정법원 2019느합1004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이 취하된 이후 원고가 2019. 7. 17. 다시 피고 및 E, F를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9느합1354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청구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 또한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시효의 진행은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인하여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9. 7. 17. 피고 및 E, F를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9느합1354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지분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결국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포괄유증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도 2021.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유언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전제로 상속지분 비율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제1, 2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김병휘, 판사 조현우

[별지 1]

목 록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 182㎡
2. 위 지상
세멘트벽돌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81.69㎡
2층 48.93㎡
지층 4.89㎡
세멘트복크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9.92㎡

[별지 2]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 []

경기도 남양주시 [] [] []

[] 아파트 [] 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

철근콘크리트조 평층래브지붕 25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남양주시 [] 대 18326㎡

2. 경기도 남양주시 [] 대 38082㎡

3. 경기도 남양주시 [] 대 445㎡

4. 경기도 남양주시 [] 대 100㎡

5. 경기도 남양주시 [] 대 1668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 호 철근콘크리트조 169.788㎡

(대지권의 표시)

1, 2, 3, 4, 5 소유권대지권 73636분의 73.967

공유자 지분 2분의 1 당 [] 소유

